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소관 :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제정 2012. 8. 23, 특허청 훈령 제721호
일부개정 2014. 1. 29, 특허청 훈령 제758호
일부개정 2016. 8. 30, 특허청 훈령 제857호
일부개정 2017. 6. 22, 특허청 훈령 제879호
일부개정 2018. 8. 10, 특허청 훈령 제917호
일부개정 2020. 12. 4, 특허청 훈령 제1025호
일부개정 2020. 12. 29, 특허청 훈령 제1030호
일부개정 2021. 4. 14, 특허청 훈령 제1040호
일부개정 2021. 6. 17, 특허청 훈령 제1049호
일부개정 2021. 8. 30, 특허청 훈령 제1060호
일부개정 2022. 12. 16, 특허청 훈령 제1096호
일부개정 2024. 4. 8, 특허청 훈령 제1162호
일부개정 2025. 10. 30, 지식재산처 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26. 10. 19, 지식재산처 훈령 제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수사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발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적발물량이 3백 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 대상 및 기준은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별표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별표1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더 높은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제4조(포상금의 신청) 신고인은 위조상품 신고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과 당해 연도의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③ 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 시에 분기별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예산이 배정된 분기에 지급해야 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 부정경쟁조사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의 사업담당자를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기준에 따라 명확한 경우 의결 결과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장 포상금 지급제한 및 환수

제9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4. 지식재산처·검찰청·경찰청·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7.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 중 위조상품 단속에 특별히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환수) 지식재산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환수한다.

제6장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조상품 신고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3조(포상금 지급의 기록관리) 지식재산처장은 별지 3호서식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환류)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폐지,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그 기한 내에라도 가능)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55호. 2026.10.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6년 1월 1일 이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단, 종래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신고포상금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신고포상금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별지 3]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별표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적발금액 기준¹⁾

적발금액	포상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0만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00만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만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0만원
10억 원 이상	500만원

2) 적발물량 기준

적발물량	포상금액
300 점 이상 1,000 점 미만	100만원
1,000 점 이상 5,000 점 미만	200만원
5,000 점 이상	300만원

1) 적발 물량(압수수량 + 판매수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직장명)
피신고인	성명	상호
	위반장소	
신고내용	신고일자	신고방법
	처리부서	담당 (수사관)
	신고내용요약	
처분결과	송치번호	송치일자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사본 1부 2. 신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포상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포상 심사내용	신고일자		처리부서	
	심사 내용	피신고인명		
		위반법규		
		위조상품명 및 품목		
		위조상품의 적발금액 원		
		위조상품의 적발물량 점		
	처분내용(일자)			
	기타 참고사항			
결정내용	포상금 원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연번	접수일자	수령인 성명	신고일자	처분내용	적발물량	적발금액	포상금 지급일자	포상금 지급액	비고